

◎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67호

담양 군관리계획 변경(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)을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 같은법 제8조제6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담양군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도 열람이 가능함

2024년 01월 31일

국토교통부장관

담양군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- 1. 군관리계획 변경(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) 결정조서 : 붙임
- 2. 위 변경 결정도면 : 생략
- 3. 위 변경 지형도면 : 생략

[붙임]

담양군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개발제한구역 변경(일부 해제)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km ²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개발제한구역	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일원	108.503909	감)0.721521	107.782388	

변경사유 :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일원에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함

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·지형도면 : 생략

※ 참고사항

군관리계획 변경 결정도(1/5,000) 및 지형도면은 담양군청(도시과)에 비치하였으며,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